

행동하는 클린파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듭니다!



사 단 법 인 한국 여성 유 권 자 연 맹
THE KOREAN LEAGUE OF WOMEN VOTERS

알 림 문

한국여성유권자연맹의 중앙이사회에서 인천연맹 제4대 회장 선출을 진행하기로 결정하게 된 사유에 대한 알림문을 올려드립니다.

한국여성유권자인천연맹 제3대 민양기 회장이 2019년 11월 1일 취임식을 했습니다. 2022년 11월 1일 임기가 완료됨에 따라 인천연맹 제4대 회장을 선출해야 합니다. 앞서 2021년 12월 29일 민양기 인천연맹 회장은 중앙 상임이사회에 참석하여 인천연맹을 잘 운영하기 위한 약속을 하였으며(조직 확대 및 회장 연임에 대한) 중앙에 도움을 구하였습니다.

2022년 1월 29일 인천연맹 정기총회를 통해 인천연맹회장이 연임에 대한 총회 회의록을 보냈으나, 진행절차를 정관에 따르지 않아 회장 선출총회를 다시 진행해야 함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나 2022년도에 중앙과의 협조 및 정관에 따른 인천연맹회장 선출 재진행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지 못했고, 현재는 연락이 두절 된 상태입니다.

또한 인천연맹 제3대 회장 임기 만료에 대한 차기 회장 선출 진행에 대한 공문을 민양기 인천연맹회장에게 2차례 보냈으나 회답이 없었으며, 중앙회장 외 여러 임원의 전화에도 응답이 없었습니다.

이에 한국여성유권자연맹은 정관 제28조 1항 '사'항에 의거, 중앙 정기이사회(2022년 11월 17일)를 통해 인천연맹 회장선출을 중앙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승인하였고, 인천연맹 회장선출 선거관리위원장 및 위원을 추대하여 인천연맹 제4대 회장 선출을 진행하게 되었음을 알립니다.

2022년 11월 28일

(사)한국여성유권자연맹 중앙회장 이은주



*정관 참조

제11조 1항. 연맹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정회원을 징계할 수 있다.

- 가. 제8조의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 나. 연맹의 각종 회의와 행사에 상당기간 참석하지 아니한 자
- 다. 그 밖에 이사회가 징계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한 자

제11조 2항. 징계는 상임이사회의 결의로 구성된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행하되, 그 의결전에 그 대상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14조 3항. 임기 중 보궐되는 임원은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28조 1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사. 지방연맹, 지부 및 청년연맹 조직 및 승인

*운영지침서 참조

1. 운영 규정

1) 지방연맹 운영 규정

① 지방연맹은 연맹 목적에 부합되는 활동을 해야 된다. ② 지방연맹은 설립 후 2년 이내에 해당지부를 조직해야 하며 지방연맹 회장 및 지부·지회회장은 정당에 가입하지 않아야 한다. ③ 지방연맹은 지방연맹을 운영하기 위하여 의결기구인 이사회를 둔다. ④ 지방연맹은 사무 간사를 두어야 한다. ⑤ 지방연맹 회원은 필히 회비를 납부해야(연회비)한다. ⑥ 연맹 목적 활동을 정당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매년 중앙본부의 사무 감사를 할 수 있다. ⑦ 연회비는 300,000원 이상으로 한다. ⑧ 지방연맹은 소정의 연회비를 중앙본부에 납부해야 한다. ⑨ 특별한 사유 없이 정기회의를 소집하지 않는 지방연맹은 징계의 대상이 된다. ⑩ 지방연맹에 대한 징계 권한은 본부가 갖고 지부에 대한 징계권은 지방연맹이 갖는다. 지부는 지방연맹에 준한다. ⑪ 지방연맹은 매년 1월 중 당해 연도 사업계획서와 전년도 사업 활동보고서와 임원명단을 중앙본부에 제출해야 한다.